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967

2022. 1. 26.(수)
정책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이의영 의원 등 7인

나. 발의일자 : 2022년 1월 10일

다. 회부일자 : 2022년 1월 11일

라. 상정일자 : 2022년 1월 19일

- 제39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 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이의영 의원)

가. 제안사유

○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개정(시행 '22. 1. 13)에 따른 단순인용 조문 정비 및 상해보상 지급범위 확대 등 반영

나. 주요내용

○ 법령 위임 근거 조항 변경 (안 제1조)

- (현행) 시행령 제35조 → (개정) 시행령 제37조

○ 의원 상해보상 지급범위 확대 (안 제2조)

- (현행) 회기 중 직무 → (개정) 직무

○ 법령 개정에 따른 위원회 명칭 변경 (안 제9조)

- 위원회 명칭 (현행) 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 → (개정)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

○ 법령에 따라 별지 서식 내용 중, 인용법조항, 위원회 명칭 등 변경 (별지 제1, 2호)

3. 검토보고 요지 (이덕항 수석전문위원)

가. 제출배경

○ 본 조례안은 「지방자치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(시행 '22. 1 .13.)개정에 따라 인용법령 명칭 및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, 의원 상해보상 지급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 검토

○ 안 제1조에서는, 인용법령에 관한 사항을 개정한 것으로,

- 이는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라 제35조가 제37조로 변경됨에 따른 것으로 문제가 없음.

○ 안 제2조에서는, 보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“직무” 의 범위를 확대 정비한 것으로,

- 이는, 이전 「지방자치법」제34조에서는 보상금 지급 범위가 회기 중 직무로 인한 상해 · 사망 등의 경우로 한정됐었으나, 「지방자치법」 개정에 따라 비회기 중이더라도 직무로 인한 상해 · 사망 등의 경우로 확대된 것에 따른 것으로 타당함.

前 「지방자치법」	現 「지방자치법」[시행 2022. 1. 13.]
제34조(상해 · 사망 등의 보상) ① 지방의회의원이 **회기 중 직무**(제61조에 따라 개회된 위원회의 직무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른 폐회 중의 공무여행을 포함한다)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	**제42조(상해 · 사망 등의 보상)** ① 지방의회의원이 **직무**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○ 안 제6조에서는, 정확한 명칭의 사용으로 행정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, 현행 “의장”을 “도의회의장”으로 개정함.

○ 안 제9조에서는, 위원회의 명칭을 “충청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”에서 “충청북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”로 변경한 것으로,

- 이는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른 것으로 문제가 없음.

□ **지방자치법 시행령 [시행 2022. 1. 13.]**

제37조(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) ②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지와 그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소속으로 **지방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**를 둔다.

○ 안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서는, 「지방자치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 법조항 및 위원회 명칭을 개정하고, “주민등록번호”를 “생년월일”로 변경함.

-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한 것과 관련해,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4조의2[4]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(공공기관, 법인, 단체 및 개인)가

4)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4조의2(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)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.

주민등록번호를 수집 · 처리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으며, 또한 「지방자치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도 지방의원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 · 허용하는 내용이 없는 바, 변경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

- 참고로 현재 12개 광역의회[5]에서 이미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및 심의 결과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운영 중임.

다. 종합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 「지방자치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(시행 '22. 1 .13.)개정에 따라 인용법령 명칭 및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, 의원 상해보상 지급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법적, 내용적으로 타당하며, 조례안 예고 및 집행부 협의를 거쳐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"생략"

5. 토 론 요 지 : "생략"

6. 심 사 결 과 : "원안가결"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"없음"

---

1. 법률 · 대통령령 · 국회규칙 · 대법원규칙 · 헌법재판소규칙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
2.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3.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

5) 현재 12개 광역의회(서울, 인천, 대전, 울산, 세종, 경기, 강원, 전북, 전남, 경북, 경남, 제주)에서 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 및 심의결과 서식에 주민등록 대신 생년월일을 기입사용하고 있음.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❍「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(이의영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967

발의연월일 : 2022년 1월 10일
발 의 자 : 이의영, 박형용, 이숙애
이상욱, 장선배, 허창원
윤남진

1. 제안이유

○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개정('21. 12. 16)에 따른 단순인용 조문 정비 및 상해보상 지급범위 확대 등 반영

2. 주요내용

가. 법령 위임 근거 조항 변경 (안 제1조)
- (현행) 시행령 제35조 → (개정) 시행령 제37조

나. 의원 상해보상 지급범위 확대 (안 제 2조)
- (현행) 회기 중 직무 → (개정) 직무

다. 법령 개정에 따른 위원회 명칭 변경 (안 제9조)
- 위원회 명칭 (현행) 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 → (개정)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

라. 법령에 따라 별지 서식 내용 중, 인용법조항, 위원회 명칭 등 변경 (별지 제1, 2호)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
나. 조례안예고 : 2022. 1. 11. ~ 2022. 1. 16
다. 협 의 : 기획관리실 정책기획관
라. 비용추계 : 첨부제외 사유서

충청북도조례 제　　호

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같은 법 시행령 제35조”를 “같은 법 시행령 제37조”로 한다.

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를”을 “회기 또는 비회기 중 수행하는 공무활동을”로 하고,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삭제하며, 같은 조 제3호를 제2호로 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의장”을 “도의회의장”으로 한다.

제9조의 제목 “(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)”을 “(의원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충청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”를 “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”로 한다.

별지 제1호 서식 중 “주민등록번호”를 “생년월일”로 하고, 주소 란의 “□□□ - □□□”를 “□□□□□”로 하며, “「지방자치법 제34조」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42조”로 한다.

별지 제2호 서식 중 “주민등록번호”를 “생년월일”로 하고, “충청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”을 “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”으로 한다.

부　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·장애·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-----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----------.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“직무”란 충청북도의회(이하 “도의회”라 한다) 의원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말한다. 가. 회기 중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나. 「지방자치법」 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.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도의회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3. (생 략)	제2조(정의) ----------. 1. ---------- 회기 또는 비회기 중 수행하는 공무활동을 ----------. <삭 제> <삭 제> <삭 제> 2. (현행 제3호와 같음)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보상금의 청구) ① (생 략)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부터 6개월이내,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권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의장을 경유하여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.	제6조(보상금의 청구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도의회의장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
제9조(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) ① 직무로 인한 사망·상해등의 해당여부와 보상 금액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에 충청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(이하 “심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 ②, ③ (생 략)	제9조(의원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) ① ---------- ---------- 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 ----------. ②, ③ (현행과 같음)

현 행

[별지 제1호서식]

접수	제 호	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		처리기간 15일
보상대상의원	성 명		주민등록번호	
청구자	성 명		주민등록번호	
	주 소	□□□ - □□□		전화번호
	청구내용	□ 사망	□ 장애	□ 상해
	보상금수령 금융기관	은행 지점	계좌번호	
상병장소			상병 년월일시	
상병원인 및 발생상황				

「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」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.

년 월 일

청구인 (인장 또는 서명)

첨부서류 1. 사망의 경우 :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, 사망진단서 1부, 그 밖에 유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
2. 장애와 상해의 경우 : 상병 경위서 1부, 장해진단서 1부, 본인의 위임장(대리인 경우)
3.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(사망.장애.상해 공통)

위의 사람은 「지방자치법 제34조」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.

년 월 일

충청북도의회의장 직인

충청북도지사 귀하

개 정 안

[별지 제1호서식]

접수	제 호	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		처리기간 15일
보상대상의원	성 명		생년월일	
청구자	성 명		생년월일	
	주 소	□□□□□		전화번호
	청구내용	□ 사망	□ 장애	□ 상해
	보상금수령 금융기관	은행 지점	계좌번호	
상병장소			상병 년월일시	
상병원인 및 발생상황				

「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」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.

년 월 일

청구인 (인장 또는 서명)

첨부서류 1. 사망의 경우 :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, 사망진단서 1부, 그 밖에 유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
2. 장애와 상해의 경우 : 상병 경위서 1부, 장해진단서 1부, 본인의 위임장(대리인 경우)
3.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(사망.장애.상해 공통)

위의 사람은 「지방자치법」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.

년 월 일

충청북도의회의장 직인

충청북도지사 귀하

현 행

[별지 제2호서식]

접수	제 호	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		처리기간 즉시
보상대상의원	성 명		주민등록 번 호	
보상금 청구내용	□ 사망 □ 장애 □ 상해			
사망·장애·상해 사실 여부 및 상태 등 경위 조사 내용				
심 의 회	〈결 정〉 〈결정이유〉			
심의결과	〈심의위원 서명〉			

「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」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.

년 월 일

충청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인

충청북도지사 귀하

개 정 안

[별지 제2호서식]

접수	제 호	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		처리기간 즉시
보상대상의원	성 명		생년월일	
보상금 청구내용	□ 사망 □ 장애 □ 상해			
사망·장애·상해 사실 여부 및 상태 등 경위 조사 내용				
심 의 회	〈결 정〉 〈결정이유〉			
심의결과	〈심의위원 서명〉			

「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」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.

년 월 일

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인

충청북도지사 귀하

관계법령 발췌

□ 지방자치법 [시행 2022. 1. 13.]

제42조(상해 · 사망 등의 보상) ① 지방의회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지방자치법 시행령 [시행 2022. 1. 13.]

제37조(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) ①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. 이 경우 제2호나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게 되면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, 그 금액은 제2호나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.

1.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·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: 시 · 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
2.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: 시 · 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
3.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: 치료비 전액. 다만, 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.

②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지와 그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**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소속으로 지방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**(이하 이 조에서 "보상심의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③ 보상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시 · 도의 경우 부시장이나 부지사(부지사 또는 부시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부지사 또는 부시장으로 한다)로, 시 · 군 · 자치구의 경우 부시장 · 부군수 · 부구청장으로 한다.

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1. 해당 지방의회의원 1명
2.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1명
3. 의무직공무원 1명
4.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
⑤ 법 제42조에 따른 보상금은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.
⑥ 보상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위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.
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의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

○ 첨부제외 관련규정

-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1조(비용추계서 작성대상) 제4항제1호

○ 첨부제외 사유

- 개정조례안에 따른 의원상해 등 보상과 관련해 재정이 수반된다고 할 수 있으나,
- 개정조례안에 규정된 상해 등 발생 여부의 불명확성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.